##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197 제출연월일: 2024. 6. 28.

제 출 자: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1조제4항 중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"을 "해당"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	제11조(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
운영) ① ~ ③ (생 략)	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	4
정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관	
리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	해당
<u>해당</u>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	
정한다.	